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1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최기상・임미애・정성호

김동아 · 김정호 · 박희승

김성환 • 박상혁 • 김태선

이수진 • 박 정 • 김남희

백승아 · 서영석 · 문정복

민병덕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,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.

하지만 열람·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,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·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4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1항 중 "재판장에게"를 "법원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판장"을 "법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재판장"을 "법원"으로, "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"를 "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재판장"을 "법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판기록의 열람·등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4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 · 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

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	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
록 열람・등사) ①소송계속 중	록 열람·등사) ①
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	
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	
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	
•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	
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	
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	
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・	
직계친족 • 형제자매 • 변호사는	
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	
<u>재판장에게</u> 신청할 수 있다.	<u>법원에</u>
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	② <u>법원</u>
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, 피	
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	
를 통지하여야 한다.	
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	③법원
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	
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	
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	
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	
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	
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	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

할 수 있다.

④<u>재판장</u>이 제3항에 따라 등사 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 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.

<신 설>

<u>⑤</u> (생 략)

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허가할 수 있다
④ <u>법원</u>
⑤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
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
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
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
다.